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78
----------	------

2024년 6월 2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이용균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용균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에도 정신문화와 공동체의식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 인문교육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시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학생들의 정서와 소양을 풍부하게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동일하게 관내 학생과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문교육 여건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 진흥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교육감의 인문교육 진흥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인문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라. 인문교육 관련 교육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이용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878호로 발의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하게 전개됨에 따라 기술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인간 중심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사회 전반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수학과 과학, 기술과 공학 분야가 선도하는 혁신이 불러올 수 있는 인간소외 문제에 대비하고, 인구감소와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¹⁾

-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1년 12월 「제2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22~2026)」을 통해 ‘국가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인문학 진흥’을 비전으로 삼고 인문학 교육·연구 강화, 융합과 국제화·디지털에 대응하는 인문학 연구 지원, 인문학 가치와 공유의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서 단위 학교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을 통해 독서교육과 연계한 인문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초·중등교육과 시민교육 분야의 인문학 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구분	예산액	주요 내용
서울	인문학 진흥	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인문교육과정 체계화 사업(초·중·고, 1,200교),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250팀), 독서교육현장연구·협력팀 및 독서교육 교사단(22단) 운영 및 수업 나눔(88회), 수업실천자료 개발(2종), 인문소양교육 관련 교원 직무연수 운영(120명), 초·중등 사서교사 직무연수 운영(100명), 독서 동아리 운영(22개관), 연합 온가족 책잔치 운영(22개관), 동네책방 네트워크 사업(13개관), 독서 증진 대회(9개관)
	인문정신문화 진흥	25,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인문아카데미(고인들)운영(70교), 도서관대학 운영(22개관), 소외계층프로그램 운영(20개관), 도서관 내 디지털라운지(6개관) 및 창의·미디어 공간 프로그램 운영(10개관)

자료 : 서울시교육청(2024.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22쪽.

1) 인문학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도 인문학이 가진 근원적 가치와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고,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인문학 부흥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인문학의 새로운 논의(연구영역)가 제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특히, 인문학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에 두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소외, 몰인간화, 양극화 심화, 소수자에 대한 혐오, 출산과 양육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의 학술적 논의가 존재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배상훈(2020)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아젠다 도출(정책연구-2019-58, 한국연구재단)」, 박휴용(2021),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문학적 지식의 성격」, 포스트휴먼교양교육실천연구 1(1), 5-18쪽 등을 참조.

-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제5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와 제7조에서 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전문가 협의, 제8조와 제9조에서 각각 인문교육 진흥 사업과 인문교육 행사 개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10조에서 경비 지원, 제11조에서 포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제1호)

- 안 제2조제1호는 “인문교육”을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같은조 제2호에서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인문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조례안의 상위법령이 되는 「인문학법」 제13조가²⁾ 「초·중

2) 「인문학법」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문교육 자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하위규범인 조례에서 별도로 개념적 정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본 조례안은 목적 규정의 기술(記述) 형식에 비추어볼 때 「인문학법」의 효과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을 뿐, 「인문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등에게 시행하는 인문교육을 포함한 교육활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³⁾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관 사무에 관해서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의견제시에⁴⁾ 기초해 볼 때, 안 제2조제1호와 같이 상위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안 제2조제1호의 “인문교육”의 정의는 현행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인문학적 소양”을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⁵⁾ 「인문학법」 제3조의⁶⁾ 용어 규정 방식 등을 종합할 때 그 내용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4)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의견 19-0196, 회신일자 2019.7.4.)

5)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016.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 Q&A 자료집 (2)», 4쪽.

6) 「인문학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3)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인문교육의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약칭하여 ‘학생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이 인문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 등의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적용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5년간(2019~2023년) 관내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1% 내외가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바, 인문교육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표-2] 최근 5년간(2019~2023년) 학업 중단율(서울)⁷⁾

(단위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전체)	1.3	1.4	0.8	1.1	1.5

4) 인문학교육 행사 개최에 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감이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문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학술행사나 강연, 국제적인 교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인문교육주간을 통해 범교과적인 성격이 강한 인문교육이 기존 교과 간 경계를 넘어 이뤄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통계」를 정리한 것임.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983, 2024.6.4.)⁸⁾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행정관리담당관-5983, 2024.6.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 등의 인문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문교육”이란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문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문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문교육을 위한 학습체계,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학생 등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
4. 교원의 인문교육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
5. 인문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6.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인문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사 연수 강화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인문교육 관련 교육·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인문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제10조(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인문교육 사업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인문교육에 큰 공헌을 한 개인과 학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